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사용권 계약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개인, 기관, 단체, 회사)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간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

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 만 아니라, 관련 매체, 인쇄물 및 "온라인" 또는 전자 문서("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

1. 사용 허가

본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허가됩니다. 사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함에 한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이 "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어셈블 할 수 없으며, 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전항의 행위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종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제한 사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가 탐지한 결과의 공유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의 웹사이트에 비인가 된 자가 고의로 삽입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탐지에 필요한 규칙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시스템에 삽입된 악성코드를 탐지할 경우 "소프트웨어"가 해당 정보(예, 관련 디렉터리를 포함한 **URL** 등)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소유한 수집시스템에 통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침해사고 예방 및 강화를 위해 활용하며, 수집한 정보는 제 **3**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5. 계약서의 인정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계약서 조건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

6. 계약의 종료

사용자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계약서의 조항에서 명시된 사용자의 권리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언 인스톨 하는 동시에 종료됩니다.

7. 준거법 및 관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 되며, 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8.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우) 138- 80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가락동 78)

홈페이지 : <http://www.krcert.or.kr>

E- Mail : mcfinder@krcert.or.kr